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2018  
KISO  
POLICY  
REFERENCE  
BOOK

2018  
KISO  
Policy  
Reference  
Book



## 머리말

---

인터넷은 인간의 표현활동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ICT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이제는 누구든지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전 세계의 수많은 발신자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매우 쉽고 간편하게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발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쌍방향의 상호작용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환경에서 다수의 대중을 수동적인 정보 수신자의 지위에서 정보의 능동적인 발신자로 전환시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수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중시하여 기존의 방송매체 등과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역

기능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표현활동 가운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 역시도 그것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표출되는 인터넷 역시 명예훼손 등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위법한 표현활동으로 권리침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체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더욱 쉽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파급력 있는 내용의 확산으로 이어져 다른 매체 보다 그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정한 규제가 수반됨은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타율적 규제 일변도로 인터넷상의 표현활동에 대처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무한한 긍정적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고도의 예민한 균형의식을 요하는 일이지만, 쉬운 길보다 쉽지 않은 그 길에 참된 해답이 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규제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활동에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수단의 면에서도 다양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이 가진 다양한 순기능적 역할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편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이용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2014년 통합정책규정을 만들고, 2015년 정책규정 해설서 발행으로 이어져 외부와 유연하게 소통하는 결과물들을 생산

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KISO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에 크게 주목하였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중요한 가치지향의 터이지만, 이후 복잡한 인터넷 공간의 양상을 감안한 다양한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공익의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특히 최근에는 검색어 관련 피해구제 등에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개정 정책규정 해설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정책 기조와 그 사이에 상당 부분 개정된 정책규정 및 그에 대한 해설 등 크고 작은 변화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과 언론 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KISO의 변화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KISO 정책위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집필을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1장과 제5장은 황용석 전 위원님이 작성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윤성욱 교수님이, 제2장은 김기중 전 위원님이 작성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황창근 교수님이, 제3장은 정경오 변호사님이, 제4장은 배영 교수님이 각 책임을 맡아 작성해 주셨습니다. 집필에 큰 노고를 쏟으신 정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관계자들, 나아가 관련 행정업무나 연구에 종사하는 분을 포함하여 KISO의 자율규제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ISO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변화·발전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장 등 서로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8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이 해 완**

## CONTENTS

<b>(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b>	8
<b>제1장</b> 정책규정 해설서를 내면서	27
<b>제2장</b> 게시물에 관한 정책	37
<b>제3장</b> 검색어에 관한 정책	81
<b>제4장</b>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117
<b>제5장</b> 그 밖의 특별 정책	135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검색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게시물 또는 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소통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물”이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란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다수 이용자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연관검색어”란 회원사가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에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를 말한다.

4. “자동완성 검색어”란 회원사들이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그 입력이 끝나기 전에 입력된 문자열을 포함하는 검색어 중 자주 입력되는 완성된 형태의 검색어를 기술적으로 선별하여 검색창 주변에 목록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 목록을 말한다.

5.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6. “후보자”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감의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감의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8. “후보자정보”란 후보자의 사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정형

화된 정보를 말한다.

9. “선거기간”이란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선거기간”을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지방의회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10. “국가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한다. 소속기관 범위는 해당부서의 직제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1.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함), 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2장 게시물에 관한 정책

### 제1절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

####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등’이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 임시조치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3. 딥링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

#### 제4조(포괄적 임시조치 등)

①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결과를 통보 이후 추가적인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제3조를 따른다.

④ 제1항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2(게시물 심의 요청)

회원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적 임시조치 등)

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회원사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신고가 없음에도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 제7조(처리 대상)

자율적 임시조치 등의 처리대상은 다음 각호 중에 하나로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 제2절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 처리

### 제8조(국가적 법익 침해 게시물 처리)

회원사는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절 임시조치후 게시물 심의

### 제9조(심의요청)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2. 그 밖에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0조(통지의무)

① 회원사는 제9조 제1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따라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회원사는 임시조치와 동시에 혹은 임시조치 후 제9조 제2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와 관련하여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제11조 [본조 삭제 2014.10.22.]

##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

### 제12조(원칙)

① 회원사는 자동화된 로직에 따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를 제시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사는 이용자의 신고, 요청 등을 계기로 노출되고 있는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한 정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도박 등의 불법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3.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 또는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4.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5.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② 회원사는 법원이 판결 등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나.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3.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5.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인, 기관, 단체, 지역 등의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4장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 제14조(목적)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읽고, 듣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한 중요한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이다.

이 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5조(검색 서비스의 제공)

회원사가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색결과는 각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후보자정보의 제공)

- ①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 ② 회원사가 인물정보와 구분하여 후보자정보를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 이름 등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결과에서 동명이인 후보자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2. 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

### 제17조(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한다)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5.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2.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への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제18조(게시물의 처리)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1.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 등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의 정책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5장 그 밖의 특별 정책

---

### 제1절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 제20조(목적)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각 회원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절은 회원사에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 제2절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 제22조(목적)

본 절은 생명존중의 인터넷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3조(게시물 등 제한)

회원사는 자살과 관련된 유해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한다.

#### 제24조(커뮤니티 등 제한)

회원사는 카페 등 커뮤니티 명칭에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 제25조(긴급한 게시물 특칙)

회원사는 신고 등을 통해 자살 시도의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 제26조(검색 특칙)

회원사는 '자살' 및 '동반자살' 검색어의 검색 시 자살 예방 상담기관 등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제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8조(계정)

- 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 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4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

#### 제30조(목적)

본 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1조(청소년 보호 조치)

회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검색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2. 해당 검색어의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 제32조(청소년 유해 검색어 관련 세부 기준)

청소년 유해 검색어 관련 세부 기준은 KISO 내의 특별 위원회인 온라인 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가 마련할 수 있다.

### 제5절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 제33조 (목적)

본 절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기사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4조(게시물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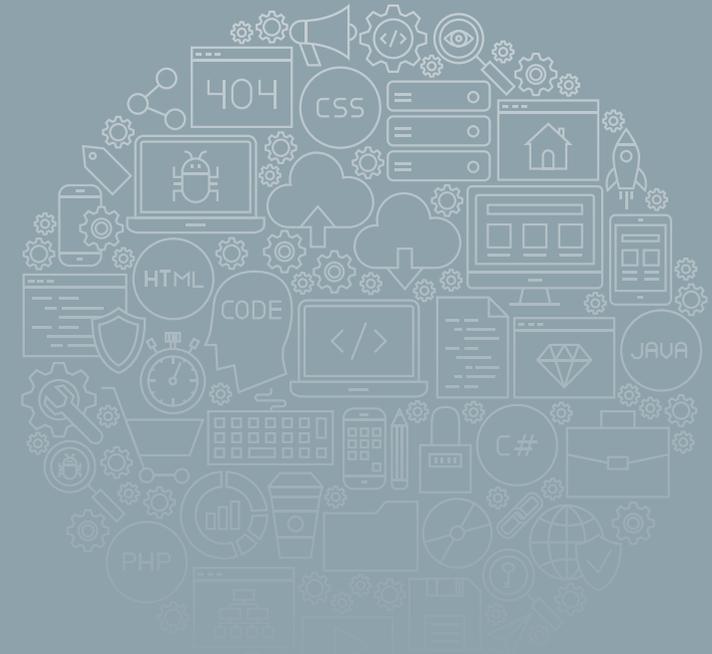
-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

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나 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사의 명이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의 경우
  2.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 장

# 정책규정 해설서를 내면서



## 제1절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의 의미

#### 1 자율규제와 정책규정

##### 가. 배경

######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사단법인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년 3월에 출범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로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국내 주요 인터넷포털사 및 인터넷 서비스회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KISO는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검색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게시물 또는 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정하고 심의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소통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바람직한 인터넷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법령의 위임을 받은 자율규제와 다르게 KISO는 자발적 자율규제(voluntary self regulation)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이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정부 등의 개입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2) 인터넷 자율규제

○ KISO가 수행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란 정부가 주도한 공적규제가 아니라 민간 또는 기업이 스스로의 활동을 규제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특징이다.

○ 여기서 말하는 ‘자율’의 의미는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개인적 자율’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공동의 관심사와 목적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부여한 조직의 권위와 일정한 권한을 바탕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율(자율규약 또는 자율정책 등)을 의미한다.

##### 나. 행동규약으로서 정책규정의 의미

○ KISO는 자발적 자율규제 기구로서 그 의사결정 구조는 강제성이 최소화된 ‘합의적 자율규제 모델(agreed-self regulation model)’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합의적 자율규제 기구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업자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동등하고 대등하게 조정하고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결정을 하되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한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 그런 점에서 회원사들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적용하는 정책규정과

같은 조직의 표준규칙(standard rules) 또는 정책원칙(the principle of policy)은 자율규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원리가 된다. 정책규정은 일종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협약(voluntary and co-operative agreement) 또는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KISO의 정책규정과 같은 민간집단의 행동강령은 국가법과 사회적 일반규범의 틀에서 구성된다.
- KISO의 정책위원회는 회원사들의 게시물 및 검색어 서비스 처리에 관한 행동기준인 ‘정책결정’ 수립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결정’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한다. ‘정책결정’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KISO의 행동기준 또는 행동규약이며, ‘심의결정’은 정책결정의 규정에 기반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판정한 결과물을 뜻한다.
- 정책결정은 회원사들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와의 ‘사적 계약’인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규약체계이다. 이 규약은 민간기업이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의 자유영역과 강제성을 띤 법령의 틀 사이에 존재한다. 즉, 정책결정은 법률의 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며, 법이 담고 있지 못한 내용과 절차를 자율적으로 보완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KISO 회원사로 한정된다.

## 2 KISO 정책규정의 결정구조

KISO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정책위원회, 사무처, 기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는 KISO의 운영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가 최상위 기구이긴 하지만, 정책결정과 같은 중요한 규칙제정 권한은 정책위원회에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

### 가. 정책위원회

#### 1) 구성 및 활동

-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사 소속이 아닌 인터넷 자율규제 전문가 5인(위원장 포함)과 회원사의 게시물 관리·운영 부서의 책임자급 3인 등 총 8인이 활동하고 있다.
- 정책위원회는 합의에 기반한 전문가위원회 구조를 띠며, 정관 제30조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구 강령 및 정책결정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안 마련
  2. 위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정책 결정
  3. 합리적인 게시물 정책 수립을 위한 기타 사업

#### 2) 정책결정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위원들의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6항). 심의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제2호). 정책결정의 경우에 전원합의를 요건으로 한 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다차원적인 논의와 숙의적(熟議的) 합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개별 게시물에 대한 결정의 경우에 전원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는 신속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각사의 게시물 및 검색어에 관한 정책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의사결정은 외부의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이다.

## 나. 사무처

- 사무처는 KISO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정책위원회 등의 의사 진행을 지원하고, 기타 부설 조직 및 종합신고센터의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 제2절 KISO 정책규정 해설서의 구성

### 1 정책규정의 통합화 작업

#### 가. 배경

- KISO의 정책결정은 초기에는 이용자 게시물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이후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을 시작으로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등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책 대상에서 외연적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 초기의 정책결정은 게시물 심의를 위한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심의 게시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최초의 정책결정은 2009년 4월 2일,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결정이다. 이후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23개의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다양한 후속 결정이 내

려지면서, 정책결정이 내려진 순서를 기준으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왔다.

○ 그러나 게시물 심의 등을 의뢰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의 사례에 기반해서 분산적으로 나열된 정책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정책결정의 조문 형식이 다르고, 개정된 사항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 이에 KISO는 2014년 6월 17일 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통합한 ‘정책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2017년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규정을, 2018년에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게시물에 대한 정책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정책규정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기존의 규정을 구조적으로 체계화하는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해설서는 2017년 12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추가 수정된 정책규정에 대한 해설을 추가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정책 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그 밖의 특별 정책으로 나뉘는 5장과 34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정책규정 해설서의 활용

이 해설서는 KISO 정책위원회에서 제정된 ‘정책규정’에 대한 해설서로서 KISO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처리기준

을 담고 있다.

### 가. 작성목적

해설서의 작성목적은 KISO 정책규정을 이용자들이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모든 정책규정의 △제정 취지 △주요내용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규정의 배경과 처리방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 나. 구성 및 특성

효과적으로 해설서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과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1) 정책규정과 법률의 관계

○ 법률이 상위에 위치하며, 정책규정은 법률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해석에 기반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그 규정을 수용하는 회원사들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자치규약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기존 법령 및 판례에 기초해서 마련된 것으로 법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 2) 정책규정의 적용 범위

○ KISO 회원사에만 한정된다.



# 제1절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관한 임시조치 등

## 1 연혁 및 의의

○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신설 규정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임시조치라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외에 임시조치의 구체적인 요청의 절차와 조치 대상 등에 관하여 더 이상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 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당시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게시물에 관하여 각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특히 도입되자마자 널리 이용되던 임시조치의 경우, 그 허용 범위와 기간,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의 게시물에 대한 조치 등이 회사별로 달라,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게시된 서비스에 따라 조치 결과에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였다.

○ 또한 새로 도입된 제도의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6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임시조치’의 이름으로 차단되거나 기간 만료 후 삭제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당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주요 7개 사업자들은 처리 기준의 통일을 모색하고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2009년 3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를 바탕으로 KISO를 출범시켰다.

○ KISO는 2009년 4월 2일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정책결정 제1호)과 2009년 6월 29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정책결정 제2호)을 결정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임시조치가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1절 중 임시조치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제3조, 제4조, 임시조치의

제한에 관한 제5조,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조치에 관한 제6조, 제7조는 모두 정책결정 제1호, 제2호를 그대로 정책규정에 수용한 것이다.

○ KISO에 가입한 회원사들(이하 문맥에 따라 ‘회원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 등을 구분없이 사용한다)은 KISO의 정관과 회원사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KISO가 정한 기준(정책규정)을 자신의 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ISO가 회원사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에 있다. 해당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2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와 함께 임시조치 관련 KISO 정책규정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도 2012년 5월 31일 선고한 2010헌마88호 정보통신망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 확인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리침해 주장자의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영리적 목적과 사인의 사생활, 명예, 기타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목적 사이에서 해당 침해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가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다.

## 제3조 임시조치 등

### 제3조(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등'이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 임시조치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3. 답링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

## 1 의의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요청의 절차와 조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정책규정 제3조는 위 제44조의2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해를 받은 자’의 조치 요청 절차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2 요건

### □ 조치 요청의 절차- 제1항

#### 1) 적용대상

- 본 조의 적용 대상은 ‘게시물’이다. 게시물이란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라는 의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문자, 화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로 정의되어 있다. 요컨대, 법률상 ‘게시판’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 둘째,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하는 것, 셋째, 서비스 운영자가 직접 정보를 게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게재한 것을 말한다.

- 정책규정은 제2조 제1항에서 “게시물이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위 법규정과 문자적인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 2) 임시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받은”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일정한 사법적 판단을 이미 “받은” 자에 한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나, 운영의 현실은 침해에 관한 ‘당사자’라면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 2010헌마88호 사건에서 ‘권리침해 주장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다.

## 3) 요청의 요건

- 요청인은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해야 한다.
- 첫째 요건인 제1항 제1호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침해사실을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 제1항 제2호의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의2의 요건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위 2010헌마88호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리침해 주장자의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법익침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권리침해 주장자의 ‘소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는 제1항 제3호는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 요구’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포괄적 요청’이란 구체적인 게시물을 지정하지 않고(URL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정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을 일괄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 요구를 배제하는 취지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대상 게시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외에도, 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조치를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도 제4조에 규정된 예외적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 취할 수 있는 조치 -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로 그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를 나열하고 있으며, 정책규정 제3조 제2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삭제, 임시조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법률과 정책규정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 ‘삭제’와 ‘임시조치’의 의미는

동일한 것이다. 정책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상 ‘반박내용의 게재’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성,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법정 사항인 ‘반박내용의 게재’ 외의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 □ 처리대상 - 제3항

- 인터넷 게시물은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거나(‘창작 게시물’) 다른 이용자가 그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하여(‘뺨’ 또는 ‘스크랩’) 게시하거나(‘스크랩 게시물’) 대상 게시물의 바로가기 링크(URL)를 제시하는 방법(‘딤링크 게시물’) 등이 있다.
- 뉴스기사 등을 스크랩한 게시물의 경우에도 기사를 인용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해당하므로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이 경우 언론사 등이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삭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KISO는 2013심21에서 법원에서 허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기사를 그대로 전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삭제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정책규정은 위와 같은 모든 형식의 게시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4조에 따라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딤링크 게시물’을 제외하고 ‘창작 게시물’과 ‘스크랩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 3 참고 사항

### □ 실체적 판단 기준 - 어떤 경우를 권리침해로 볼 것인지 문제

- 정책규정은 어떤 경우를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로 볼 것인지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마찬가지이다.
- 인터넷 게시판에서 권리침해는 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이 중 ‘명예훼손’은 공언히 구체적으로 진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표현행위로 인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므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2015심25).
- ‘모욕’의 경우 명예훼손과 달리, 특정인을 상대로 추상적인 판단이나 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 등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 다만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욕설은 권리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특정’은 반드시 성명 등을 명확히 밝혀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전후의 문맥을 고려하여 누구인지 특

정이 가능한 수준이면 족하다.

- 이러한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이나 정책규정 모두 권리 침해 여부 판단 기준은 물론이고, 권리침해의 우려만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 등이 가능한 것인지, 권리침해가 명백할 경우에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KISO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법률과 법원의 판례 및 일반적인 해석기준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 제4조 포괄적 임시조치 등

제4조(포괄적 임시조치 등)

- ①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결과를 통보 이후 추가적인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제3조를 따른다.
- ④ 제1항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1 의의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삭제’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다수의 게시물이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등의 상

황에서 대상 게시물을 그대로 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피해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별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의 게시물을 포괄적으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과 그에 따른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 2 주요 내용

### □ 포괄적 임시조치가 가능한 경우 - 제1항

-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①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며, ②피해자는 URL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대상 게시물을 특정해야 하며, ③당사자임을 밝히고 침해 사유를 소명한 경우여야 한다.
-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수의 게시물이 게시되고 있어 당사자가 개별 게시물을 일일이 지정하기 무척 곤란하며, 이러한 게시물이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 처리대상 - 제2항

- 일반적인 경우 임시조치는 모든 형식의 게시물에 대해 가능하나(제3조), 포괄적 요청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

하기 어려운 ‘딥링크 게시물’을 제외하고 ‘창작 게시물’과 ‘스크랩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 □ 주의사항 - 제3,4항

-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는 수십만, 수백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 중에 대상 게시물을 찾기 어렵다는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포괄적 요청에 의해 다수의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별 게시물의 특성이나 개별적인 주장 내용의 차이 등을 일일이 고려하지 못한 결과 적법한 게시물까지 차단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포괄적 요청에 의해 게시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그 처리 이후에는 게시물 처리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이에 정책규정은 제4조 제3항에서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그 통지를 한 이후에는 다시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침해 주장자는 개별 게시물의 URL을 지정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 또한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4항에서 주의적으로 규정하였다.

## 제5조 처리의 제한

### 제5조(처리 제한)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1 의의

- 정책규정 제5조(처리 제한)는 KISO가 설정한 게시물 처리정책의 요

체이며 정수이다.

- 대법원은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래 일관하여 공적 존재,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왔다.
-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는 이러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상 게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 존재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 기준에 따라 대상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공적 존재 및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까지 무차별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되었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KISO는 임시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만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기준인 정책결정 제1호(2009년 4월 2일)와 제2호(2009년 6월 29일)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 위 제5조는 정책결정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 KISO가 2009년 6월 29일 정책결정 제2호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정책결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受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2 요건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외 - 제1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다만, 개인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장과 구성원은 제외되어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허용하였다.

○ 이 규정은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등)를 근거로 입안되었다.

○ 위와 같이 이 규정을 정책으로 결정하기 이전부터 국가나 국가기관

등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정책으로 결정한 후, 대법원도 2011.09.0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련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제한 - 제2항

○ 본 조의 적용대상인 공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적 존재’ 또는 ‘공인’보다 좁은 개념이다. 공적 존재라는 점에 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존재인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게시물이 그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그 적용대상인 공인의 범위를 좁게 설정한 것이다. 2009년 6월 29일자 제2호 정책에서 결정된 기준이다.

-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소명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시조치가 제한된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

**1)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위**

-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정무직 공무원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공인을 포함한다.

-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며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 경력직공무원에는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있다.

-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으며,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장관이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위는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 외에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존재도 이 규정에 의한 공인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동안 심의결정 사례에 의하면, 외국 주재 대사(2013심45), 정당(2013심40), 국립대학교 및 총장(심의-제2011-06-01-02), 대통령 후보자(2012심7)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포함되고, 지상파 방송사(2014심8), 사립대학교(2013심46)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구분	적용대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헌법 제67조①), 국회의원(헌법 제41조①), 자치단체장(지방자치법 제94조),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법 제31조),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교육의원(제주특별법 제64조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대법원장(헌법 제104조①), 대법관(헌법 제104조②),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④), 감사원장(헌법 제98조②), 국무총리(헌법 제86조①), 원수(元帥)(군인사법 제17조의2 ②)

<p>법률에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p>	<p><b>정부조직법상 정무직 공무원</b>  국무위원(제12조③), 대통령 비서실장(제14조②), 국가안보실장(제15조②), 대통령경호처장(제16조②), 국무조정실장·차장(제20조②,③), 국무총리비서실장(제21조②), 국가보훈처장·차장(제22조의2②), 인사혁신처장(제22조의3②)  법제처장(제23조②), 국가보훈처장(제24조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5조②), 행정각부 차관(제26조②), 국세청장(제27조④), 관세청장(제27조⑥), 조달청장(제27조⑧), 통계청장(제27조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부장(제29조②), 병무청장(제33조④), 방위사업청장(제33조⑥), 행정안전부 본부장(제34조③), 문화재청장(제35조④), 농촌진흥청장(제36조④), 산림청장(제36조⑥), 산업통상지원부 본부장(제37조②), 특허청장(제37조⑤), 질병관리본부장(제38조③), 기상청장(제39조③)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법 제15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무차장(헌법재판소법 제18조①,②), 감사위원(감사원법 제5조②),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법 제19조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차장(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④, ⑥), 국가정보원장, 차장(국가정보원법 제7조②,③),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법 제4조②),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사무차장(국회사무처법 제5조②), 국회의장 비서실장(국회사무처법 제6조②), 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①), 국회입법조사처장(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①), 국회도서관장(국회도서관법 제4조②)</p>
<p>대통령령에 정무직으로 정한 자</p>	<p>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보좌관·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의2②·제4조②), 대통령 경호실 차장(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②), 국가안보실 차장(국가안보실 직제 제4조①),</p>
<p>KISO 결정상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p>	<p>외국주재 대사(2013심45), 정당(2013심40), 국립대학교 및 총장(심의 제2011-06-01-02), 대통령 후보자(2012심7)</p>
<p>그 밖에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자</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p>

○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KISO는 각 심의별로 해당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공인의 범위를 정한 바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인 기준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를 공인으로 보고 있다.

1. 고위 공직자
  -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 나. 국회의원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 라. 교육감
  - 마.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 바.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 사. 대통령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 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
7. 그 밖에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범위**

○ 사생활은 공적 업무와 무관하나,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그 사생활에

대한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공적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 그동안의 심의사례에 의하면, 가족간의 대화 녹취록에 수록된 가족간의 다툼(2013심26), 확인되지 않은 불륜 관계(2013심12)는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라고 보았으나, 공직자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의혹의 주장(2012심7),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관계 관련 사항(2012심17)은 공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 신청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이후에 임시조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4항)

### 3) '명백한 허위사실' 여부의 판단 기준

○ 명백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정책규정은 소명자료 제출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문의 구성 형식과 권리침해 주장자에게 소명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그 소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소명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 그동안의 심의사례에 의하면 공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이

아닌 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되는 사안을 직접적으로 판결한 1심 판결문(2012심18), 해당 게시물과 유사한 사항을 배포한 자에 대한 유죄 판결문(2013심18)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되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주장되는 여러 사실 중 일부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서(2013심47), 단순히 명예훼손 사항이 존재하는 기사의 삭제 사실(2013심30),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종교 관련 임의단체에 의한 확인서(2014심20)는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입증이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관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본 항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 표현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면책되는 기준인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한다<sup>1)</sup>.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을 허용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선불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제한적 범위의 공인에 대한 게시물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판례에 의한 언론사 면책 기준인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 기준이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1) 황창근, KISO 정책결정 제3,4호에 대한 평석, 키소저널 제2호, 2010. 1.

## □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에 대한 제한 - 제3항

- 정책결정 제2호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임시조치 요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그 대상을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좁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적 존재나 공인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게시물에 대한 취급 기준이 불분명하였다.
- 예를 들면, ‘일반 검사’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반면, 일반 검사도 공직자로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할 주체이기도 하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였다.
- 법원은 공직자나 언론사 등의 공인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KISO는 2012년 7월 25일 정책결정 제14호로, 위 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 대법원 2003.07.0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란 판례가 인정하는 기준과 완전히 동일하며, 역시 신청인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임을 소명해야 한다.
- 그동안의 심의 사례에 의하면, 일반 검사(심의-제2011-09-01호), 일반 판사(2014심7), 지상파 방송사(2014심8), 사립대학교 및 총장(2013심46, 2016심5-1), 국가 기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2012심7, 2012심5),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협회(2016심10)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 제3항의 ‘그 업무에 관한 것’에는 해당 공직자가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포함된다.(제4항)

-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

### 3 예외

제5조(처리의 제한) ①~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 제5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에도, 대상 게시물이 신청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 등이 허용될 수 있다.(제5조 제2항)
-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인 경우에도, 대상 게시물이 그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정되거나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 또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이 허용될 수 있다.(제5조 제3항)

#### □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 공인 등의 업무에 관한 게시물이든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내용인 경우에는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심의-제 2011-09-01호의 심의결정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대법원 2002.01.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

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 하지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이라도 문맥과 정황에 따라서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ISO는 정치를 비판하는 풍자나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욕설 등의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2012심13, 2012심16, 2013심6, 2017심5). 이런 점에서 본 규정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모욕적인 표현‘만’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어 왔다.

○ KISO는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 없이 단순히 ‘OOO ××년 죽이고 싶은데’ ‘××년 죽이려면’ ‘××들을 죽일 수 만 있다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2013심17), ‘개판’이라는 표현(2014심18), ‘국개의원’이라는 표현(2013심51) 등은 일정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거나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뉴스를 근거로 한 사실을 제시하는 내용인 경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4심10, 11).

## ※ 심의 사례

### ● 2017심5

.... 신청인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후보로서, 사회적 관심도와 그에 따르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012.09.04. 2012심8 등 참고)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발언한 경제적 공약과 관련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특정 세력과 관련이 있는 자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러한 비판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신청인이 공약으로 발언한 사항은 널리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으로 신청인 역시 해당사안의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의 해당 공약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신청인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일부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신청인을 비판하면서, 일부 과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신청인이 특정 세력과 관련이 있는 자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해당사안의 본질은 신청인의 공약에 대한 비판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 제6조 자율적 임시조치 등

제6조(자율적 임시조치 등)

- 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회원사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신고가 없음에도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다만,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제7조(처리 대상) 자율적 임시조치 등의 처리대상은 다음 각호 중에 하나로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 1 의의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삭제’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다수의 게시물이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등 그대

로 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피해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 없이도 자율적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다.

- 대법원도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인터넷종합정보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차단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정책규정 제6조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2 요건

#### □ 자율적 임시조치의 요건과 주의사항 - 제6조

- 자율적 임시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①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②‘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란, 첫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둘째,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인 경우

를 말하며, ③KISO의 심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KISO의 심의결정은 자율적 임시조치의 필수적 요구사항은 아니나, 가급적 KISO의 심의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자율적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위 기준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KISO와 회원사는 대법원의 위 판단 기준을 적절히 참조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 회원사는 위 절차가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에 유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조 제2항 단서)

#### □ 처리대상 - 제7조

○ 일반적인 경우 임시조치는 모든 형식의 게시물에 대해 가능하나(제3조), 자율적 임시조치는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딥링크 게시물’을 제외하고 ‘창작 게시물’과 ‘스크랩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 제2절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 처리

### 제8조 국가적 법익 침해 게시물 처리

제8조(국가적 법익 침해 게시물 처리) 회원사는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의의

○ 경찰청 등의 정부기관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게시물의 불법성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이 문제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에 관한 것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책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과되어 있고, 달리 정

부기관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44조의2는 불법정보의 처리 근거가 될 수 없다.

○ 게다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정보가 불법정보인지 판단할 수 없고, 자율규제기관인 KISO도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으며, 불법 여부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단순히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그 요청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특정 게시물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이에 불법정보 중 권리침해와 전혀 무관한 사항인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정부기관이 직접 회원사에 게시물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2 요건

○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요청에 대해서, 회원사는 직접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통

신위원회에 특정 정보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그 제한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정보는 이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 회원사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해당 정부기관에 안내하게 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 제3절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

#### 제9조 심의요청 제10조 통지의무

제9조(심의요청)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2. 그 밖에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통지의무)

- ① 회원사는 제9조 제1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따라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② 회원사는 임시조치와 동시에 혹은 임시조치 후 제9조 제2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와 관련하여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본조 삭제 2014.10.22]

#### 1 의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에 30일 이내의 기간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대해 그동안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온 비판은 임시조치 이후의 처리방법과 처리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대상 게시물을 복구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 임시조치제 도입 초기에 회원사 중 일부는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 복구되도록 하였고, 다른 회원사는 자동 삭제되도록 하였으나, 2008년 ‘촛불 사태’ 이후 정보 게재자가 재게시 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 이에 따라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적법한 게시글이 권리침해 주장자의 단순한 소명만으로 영구히 삭제될 수 있게 되었고, 당시 대략 연간 10만건 정도의 게시물이 임시조치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게시물의 '결과적인' 영구 삭제는 임시조치 이후에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구권이 불분명하고, 임시조치 기간인 30일 이후 처리방법이나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구 이후의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임시조치제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사후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 임시조치가 취해진 게시물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으로는 법정 임시조치 기간(30일)이 종료하면 무조건 재게시하는 방안과 법정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하면 특별한 판단이 없는 한 무조건 삭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하면 게시물을 무조건 재게시하는 방안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목적(30일 동안 접근차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30일 경과 후 재게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안이기는 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자신의 위협으로 정보를 재게시하는 것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밖에 없다.
- 이에 KISO는 2012년 4월 25일 정책결정 제12호로 정보 게재자의 재게시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마침 헌법재판소도 2012년 5월 31일에 선고한 위 2010헌마88호 판결에서,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에 정보 게재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을 경우 등 향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보의 불법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 게재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라고 판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후의 절차에 관하여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그동안 분명한 근거가 없었던 사항으로, 회원사가 임시조치와 동시에 또는 임시조치 후에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다.

## 2 요건

- 본 절에 의한 심의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이다.
- 재게시 심의는 두 가지 경우에 개시될 수 있다. 첫째,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신청을 하고 회원사가 KISO에 재게시 심의를 요청한 경우, 둘째, 회원사가 임시조치와 동시에 또는 임시조치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KISO에 그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개시된다.
-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게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권리침해 주장자에게 KISO 심의가 개시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10조 제1항).
- 회원사가 임시조치와 동시에 또는 임시조치를 한 이후에 필요하다



## 제12조 원칙

### 제12조(원칙)

- ① 회원사는 자동화된 로직에 따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를 제시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② 회원사는 이용자의 신고, 요청 등을 계기로 노출되고 있는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의의

-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하고 인터넷 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이 검색한 검색어 추출과 해당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키워드 추출 등 알고리즘적인 기법을 통해 특정 검색어와 상호 긴밀히 연관된 검색어를 검색 입력창 또는 그 인접영역에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살

펴보면, 연관검색어란 이용자들의 검색 질의 패턴을 분석하여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기능이며, 자동완성 검색어란 브라우저 등을 통해 검색 서비스 이용 시 일부만을 입력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자료를 제시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해당 정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 검색어 자체는 이용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의 집합적 행동을 통해 특정 개인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로서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생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용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편향성(Bias)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어의 관리 혹은 삭제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검색어가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박 사이트 등을 안내하는 등, 불법적인 내용을 손쉽게 접하게 할 경우, 개별 법률위반이 문제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해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보호와 같은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색어의 생성과 변경을 금지하고 삭제가 가능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알 권리와 밀접한 검색어 서비스의 운영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 요건

---

### □ 연관검색어 등의 인위적 생성 또는 변경 금지

- 인위적 생성 또는 변경이란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검색어를 만들거나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검색어의 삭제 또는 추가를 통해 기존 검색어를 본래와 다르게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책규정 제12조는 각 사의 고유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관 검색어 등을 생성·변경할 뿐, 인위적으로 생성, 변경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 다만 이 규정과 이후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색어의 삭제가 가능 하다.

### □ KISO에 대한 심의 요청

- 회원사는 본 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삭제 여부에 대해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해석상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침해성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회원사는 삭제요청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제9조, 제13조의2 참조). 다만, 공익적인 목적에

서 삭제하는 검색어의 경우 회원사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도 삭제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경우 설령 요청인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서도 상정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제13조 참조).

## 3 참고 사항

---

- 연관검색어는 개인화검색 서비스에 해당되며, 개인화검색이란 이용자의 관심을 좀 더 빠르게 반영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색행동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추천형 서비스를 말한다.
- 개인화 서비스에 다양한 기술 방식이 적용되는데, 시멘틱웹 검색 방식, 이용자 정보에 기반한 개인화 검색 방식, 웹페이지를 이용한 개인화 검색 방식, 쿼리확장 방식이 있다.

- 시멘틱웹 검색 방식은 웹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검색결과를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검색 방식을 의미하고, 이용자 정보에 기반한 개인화 검색 방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패턴이나 관심 주제를 판단해서 검색효율을 증대해 주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 또한 웹 페이지를 이용한 개인화 검색 방식은 이용자가 웹에서 보고 있는 문서의 특징을 추출해서 관심분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어를 추천하여 검색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쿼리확장 방식은 검색어를 자동적으로 확장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연관검색어는 쿼리확장 방식을 의미하며, 쿼리확장 방식이 작동되는 구조 역시 다양하다.

- 사용자가 처음 입력한 검색어를 주제범주별로 제시한다거나, 데이터마이닝 기법 등을 통해 이전에 방문했던 웹상의 문서들을 분석해서 추천하는 단어추출 기법을 사용하거나, 동의어나 관련어 어휘사전인 시소로스(thesaurus)를 이용하거나, 유사한 빈도로 추출되는 검색어를 클러스터링(clustering)하는 방식 등이 있다.

- 클러스터링은 검색어가 동시출현하는 빈도(co-occurrence frequency)를 측정하고 검색어 간 유사도(analogous map)를 측정하여 검색어와 유사한 용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제13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제13조(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한 정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도박 등의 불법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3.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 또는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4.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5.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② 회원사는 법원이 판결 등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1 의의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검색어는 이용자의 입력 등을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여 제공하며, 인위적인 검색어의 생성이나 변경은 금지된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검색어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는 존재할 것이다. 이용자의 입력이 있었으나, 특정인의 신상을 파헤치고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음란한 정보 혹은 도박 등의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연관검색어 등이 상업적 기타 용도로 남용된 경우, 오타 비속어 욕설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이다.

○ 앞서 설명한 사유의 검색어를 삭제하는 것은, 일반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법 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는 회원사가 관련자의 신청 등이 없더라도 이러한 검색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법원의 판결 등 또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 결정에 의해 검색어 삭제가 요청되는 경우도 또한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요건

### □ 일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삭제

제13조(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회원사는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알게 된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회원사는 자체 검색어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검색어에 관한 당사자 외의 일반 이용자의 신고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 역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노출(제1호)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생존한 자연인, 개인 관련성, 식별가능성, 결합가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사망자나 태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단체에 관한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2)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

를 받을 수가 없다.

- 개인정보 노출이란 특정인에 대한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이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자체로 노출되거나 또는 그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대포통장, 대포폰 등이 범죄 등에 사용될 경우 정보주체도 명의자로서 책임지게 되는 위험이 있고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행위나 처벌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누설·유출한 행위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 그러나 연관검색어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행태기반에 근거하여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누설·유출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취지는 정보주체에게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는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정보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다만 해당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합치하여 공개된 경우, 요컨대 정무직 공무원의 인물정보를 공개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혹은 다수의 언론에서 실명 등을 공개하는 등으로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 있음이 확인되어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해 삭제가 제한된다. 해당 조항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해당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주된 목적이며 부수적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누출·유출되어 이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공공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검색어는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

## 2) 불법 정보(제2호)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한 정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도박 등의 불법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부담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 음란·도박의 의미

-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1)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9228 판결).

(판례2)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해 불법으로 해당하는 정보로 매개하는 검색어만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어 역시 삭제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른 마약류를 사고파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 역시 해당 조항에 의해 삭제 가능하다.
- 권리침해와 관련된 검색어는 해당 조항에 의해 삭제되지 않는다. 권리침해의 경우에도 그 양태에 따라 역시 민·형사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권리침해의 경우에는 제13조의2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 해당 사안의 불법성이 명예훼손성 등 권리침해성이 아닌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삭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생성된 연관검색어 등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 등이 음란물로 연결될 경우에는 음란으로도 처리

가 가능하다. 이는 권리침해 이외에 ‘불법’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청소년 유해 정보(제3호)

3.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 또는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선정적인 정보) 음란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지만 선정적인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선정적인 정보는 불법정보는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서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 음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 성표현이라면, 저속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성표현을 의미하는데, 선정성은 저속한 표현에 해당한다.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 (잔혹·혐오스러운 정보)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운 정보 역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그 자체로서는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크다.

- 잔혹·혐오스러운 정보로는 자살 또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시신 또는 그 훼손된 상태가 그대로 노출된 정보, 과도한 폭력에 의한 상해 또는 신체의 절단 등 훼손된 상태가 그대로 노출된 정보, 신체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이 그대로 노출된 정보, 동물이나 곤충 등과 관련된 혐오스러운 상태가 그대로 노출된 정보 등이 있다.

○ (타 조항과의 관계) 검색어 혹은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선정적이면서, 특정인의 권리를 해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역시 불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특정인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검색어의 경우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 혹은 제3자가 잔혹·혐오 정보로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할 수 있다.

#### 4) 검색어의 비정상적 남용(제4호)

4.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는 흔히 말하는 어뷰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어뷰징이란 부정행위 또는 조작을 의미하며, 검색어의 생성이 이용자가 해당 검색어를 검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달리 이용자들의 동향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어가 생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 어뷰징은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특정검색어를 생성하거나 혹은 제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어뷰징성 검색어는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성되거나

실제 이용자들이 검색한 결과로 형성된 검색어가 아니라 왜곡에 의해 형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제외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어부징을 적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5) 오타 욕설 비속어 등(제5호)

5.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오타는 컴퓨터 자판 입력하는 경우 문자, 부호,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욕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을 의미하며, 비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을 의미한다.

○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은 실제로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삭제를 하거나 검색어 노출

을 제외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특히 ‘자동완성검색어’의 경우 이용자가 검색어의 일부만 입력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한 사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오타가 제공될 경우 이용자의 혼란을 유도해 올바른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해당 검색어를 삭제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 욕설, 비속어의 경우에도 이러한 검색어가 노출되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앞서 설명한 검색어 서비스 제공의 취지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관련이 있는데 욕설과 비속어는 이러한 알 권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욕설과 비속어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하는 정책을 정하였다.

### □ 법원 등으로부터의 삭제요청

② 회원사는 법원이 판결 등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연관검색어 등으로 피해를 받은 자가 법원으로부터 연관검색어 등 삭제의 가처분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 법원은 삭제의 판결뿐만 아니라 검색어 노출금지 가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통지를 받았거나 인지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검색어를 삭제한다.

○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회원사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 회원사가 이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집행부정지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제기로 인해 청구대상물에 대한 시효진행이 중단되는 등의 효과가 인정되나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의 제기가 그 대상이 되는 당해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이는 당사자의 권리보호보다는 행정작용의 계속성 보장에 그 중점이 있다.

## 제13조의2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나.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 3.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 5.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인, 기관, 단체, 지역 등의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1 의의

-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에서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알 권리와 피해주장자의 피해를 적절히 조율하는 데 해당 조항의 목적이 있다.
- 해당조항은 기존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의 2호 내지 5호의 내용을 상세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해당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이 고려되었다.

- 검색어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낙인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정도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위와 같은 의견은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검색어는 그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심의(2016심7)로 발전하였다.

-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를 쉽게 허용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2 요건

### □ 공통요건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의2는 권리침해에 따른 검색어 삭제를 검토함에 있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요청인이 본인임을 밝히고 특정한 검색어에 의한 침해사실을 소명하여야 삭제가 가능하다.

○ 검색어의 ‘특정’은 조치를 요청하는 대상 검색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 단어와 조합된 검색어 전체’와 같이 집단화해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침해사실의 소명’은 제3조와 같이 반드시 경제적 침해나 현실적인 손해가 있었음을 밝힐 필요는 없으며, 각 요건에 따라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요건

### 1)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삭제요청(가목)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삭제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 기준에 따르면, 요청인이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

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는, 현재 요청인의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직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본회의에서 수행한 행동으로 검색어가 생성된다면, 이러한 검색어가 공적업무와 관련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은 국가와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 도덕적인 측면 역시 강조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비공인과는 다르게 일정부분의 사생활 영역 역시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검색어는 삭제하지 않는다.

○ 이러한 영역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관련 검색어는 요청에 의해 삭제 가능하다.

### 2) 일반인의 사생활 요건(나목)

나. 제2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사생활 역시 공직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선거 후보 등의 검증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해당 사안이 사생활 영역에서만 발생한 사안이라면 이는 공중의 정당한 알 권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본 목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검색어를 삭제하는 요건이다. 이는 가목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 3) 허위사실 요건(다목)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 검색어가 허위 사실 혹은 그 검색결과에서 허위사실이 나타날 경우 이를 삭제하는 요건이다.

○ 소명은 제3조의 요건과 같이 증명에 이를 필요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는 밝혀진 상태를 의미한다.

○ 적극적 사실에 대해 소명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나, 어떠한 사실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배경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여부를 판단한다.

- 예를 들면, 관련 사안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수사기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공문서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 4) 기간경과 요건(라목)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됨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공적 관심화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배경에 신청인의 행위 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지만, 그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안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검색어를 삭제한다.

○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공적 관심사라는 것은 해당 사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제기 등에 관한 토론 내지는 사안 자체에 대한 여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는 이른바 검색어에서 '잊힐 권리'를 일부 반영한 측면이 있다.

○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

- 즉 상당한 기간이 지나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검색어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검색어이지만 단순히 유사사건이 발생하여 재점화된 검색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 5) 기타요건 (마~사목)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 기타의 요건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데, 예정하고 있는 것은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 부정적 내용의 검색어이나 검색결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기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이다.
-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는 요컨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공적 업무로 타인의 비위사실을 지적한 경우 요청인의 연관검색어 등으로 관련 비위사실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러하다.
-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의미의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는 검색어로 현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반면, 검색어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고려한 규정이다.

- 마지막으로 사 목의 경우 각 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크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 □ 기타 권리침해 요건

#### 1) 명백한 저작권 침해(제2호)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10조).
- 저작권을 침해하는 검색어는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검색결과를 유도하는 검색어를 의미한다.
  -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란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명백한 저작권 침해를 별도로 검색어 제외 사유로 분류한 것은 불법성 검색어 중 저작권을 침해하는 검색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저작권침해가 많아진 결과이다.

○ 해당 검색어는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삭제가능하다.

## 2)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제3호)

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검색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일 것, ②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을 것, ③ 연관검색어 등으로 비하적인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을 필요로 한다.

○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비하나 왜곡, 모독은 유엔인권헌장의 정신을 위반하는 비인간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평화, 국민화합을 추구하는 국제체제마저도 위협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sup>3)</sup>

○ 그런데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사실상 국가체계를 위협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위협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 최근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활동은 사회적인 수용의 한도를 초과하여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정책규정은 그동안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및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KISO 입장에서는 사회통합과 안정이라는 사회적 법익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심영섭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리뷰”

### 3) 상표권 혹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삭제(제4호)

4.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 검색어를 통해 경쟁상품이 연관검색어 등으로 노출되는 것은 이용자가 다양한 제품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라 할 것이다.
- 그러나, 명칭이 유사한 사유 등으로 관련 검색어를 노출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경우 법원 등의 판결 또는 결정,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혹은 결정을 제공하여, 상호나 상표의 상표권 위반 혹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항을 소명할 경우 연관검색어 등으로 노출되는 관련 상호나 상표를 삭제할 수 있다.
- 다만, 이용자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순한 상호나 상표 노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용자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삭제

하지 아니한다.

### 4) 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 (제5호)

5.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인, 기관, 단체, 지역 등의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최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이 보편화되면서 언론에서 비실명으로 보도된 사안에 대해 실명 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실명 등이 공개되는 것 역시 인터넷 이용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나, 특히 지역명 등이 공개되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 없는 지역 주민 등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경우 특히 관련사항이 검색어로 등재됨으로써, 더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이 보여 이에 대한 삭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해당 항목에서는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관련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삭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삭제는 반드시 명확한 당사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 사는 개인, 유관 기관, 단체 역시 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삭제의 범위를 넓혀 둔 특징이 있다.



## 제14조 목적

제14조(목적)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읽고, 듣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한 중요한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이다.

이 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연혁 및 의의

-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운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2011년 10월 5일 결정한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을 최초로 하여, 2012년 2월 16일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12년 3월 28일에 게시물 처리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추가 결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선거는 정치적 공간에서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중요한 제도로, 온라인에서 활동과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방식의 선거 홍보와 캠페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오늘날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중요한 정치적 소통과 정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정치적 학습의 장이자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정치적 관심을 넓히고 참여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동시에 잠재된 이해와 갈등이 표출되면서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일상화되었다.
- 기본적으로 온라인 공간의 인터넷 이용에서 포털 서비스가 갖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과정을 통해 포털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정치적 행위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유권자들의 인식과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KISO는 선거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론의 공간으로서 인터넷 포털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 선거기간 중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담은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관련 정책을 결정하였다.

### 2 주요 내용

- 제14조에 나타난 다음의 내용, 즉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선거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활동으로서 규약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중립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정책결정의 내용은 선거후 보나 정당의 불필요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담고 있다.

- 선거기간 공직선거법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이 감시되고 통제될 수 있으나, 그 밖에 합법 또는 불법을 가늠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포털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선거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KISO에서 결정한 선거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특정인의 이해를 도모하거나 반하지 않도록 ‘부당한 규칙’을 만들지 않는 데 있다.

## 제15조 검색 서비스의 제공

제15조(검색 서비스의 제공) 회원사가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색결과는 각 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1 의의

- 검색서비스는 포털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로 통합검색을 기본으로 하여 기능별, 내용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유권자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15조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검색 결과의 산출 및 제공에서 회원사의 기본적 정책 지향을 밝히고 있다.
- 즉 제15조는 회원사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내용이 각 사가 고유한 기술에 기반하여 만들어낸 알고리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검색 결과의 산출 및 처리에서 선거 관련 이해 당사자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에서 자유로운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했다.

## 2 주요 내용

- 검색서비스에서 특정 키워드에 대해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와 추출은 각사가 보유한 검색엔진별로 설계된 알고리즘에 기반해 있다. 검색엔진이 작동하여 검색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은 사업적 특성상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보안사항이고, 노출되었을 때 다양한 어뷰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포털의 이용, 그중에서도 검색을 활용한 정보의 습득이 일상화되면서 검색결과가 제시하는 내용이 이용자들의 인식 전반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요구가 나타났다. 온라인 마케팅과 관계된 다양한 상업적 요구와 함께 정치적 영역에서도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온라인PR회사들의 경우 검색엔진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e) 기법을 적용하여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분석, 적용함으로써 PR을 의뢰해 온 고객들의 사이트나 정보가 검색결과 추출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시도한다. 검색엔진 알고리즘에 대한 PR회사의 분석과 이를 활용한 홍보는 검색 결과에 인위적인 정보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포털 서비스 제공자는 이의 방지를 통해 검색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 선거 과정 중의 후보자들도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PR회사들처럼 SEO를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구사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조직이나 후보의 부적절한 요구나 요청이 직접적으로 포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를 수용하여 검색 결과 나타나는 후보자 관련 정보를 수정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서비스 행태라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차원에서 이용자 편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의해 규칙이 훼손된 것’으로 이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하겠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제15조는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색결과와 현출은 각 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제16조 후보자정보의 제공

제16조(후보자정보의 제공)

- ①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 ② 회원사가 인물정보와 구분하여 후보자정보를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 이름 등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결과에서 동명이인 후보자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2. 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

### 1 의의

○ 후보자의 인명 정보는 중요한 선거관련 정보 중 하나이다. KISO 회원사들은 사별로 별도의 인명DB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DB에 포함된 내용이 공인된 자료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KISO 회원사들은 인명 정보를 구축하면서 선거 당사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 타 인명DB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그리고 사별로 언론 기사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서 자체 수정하는 방식 등을 활용했는데, 근원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게시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 이에 제16조는 KISO 회원사들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 정보를 취합하고 제시할 때 공인되고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출의 기본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 2 주요 내용

### □ 후보자 정보의 출처 - 제1항

○ 제1항의 내용은 KISO 회원사들이 선거기간 중 이용자들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서비스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선거 기간 외에 개별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인명DB와는 별도로 선거기간 중에는 국가기관에서 공인이 이루어진 선거 후보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 동명이인 후보자의 노출순서 - 제2항

○ 동명이인의 경우, 기존 회원사별 인명DB에서는 처리하는 기준이 각기 달랐으나, 후보자 정보 서비스에서는 공통된 기준을 정해서 ①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②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로 처리키로 하였다.

○ 이러한 기준의 제시는 후보자 정보의 배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후보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도모하였다.

## 제17조 검색어의 처리

제17조(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한다)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의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5.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2.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1 의의

○ 제17조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 검색어 처리 시 적용되는 후보자 등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후보자 등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 및 제외요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응하지 아니하고,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에 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제17조를 통해 해당 기간 중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그리고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까지를 ‘한시적 공인’으로 특정하여, 제2항의 해당 기간 중 공인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공인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관련한 선거정보 및 게시물의 처리를 공인에 준용하여 적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면 더욱 폭넓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는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함이다.

## 2 요건

### □ 제2항의 기간 중 검색어 삭제 및 제외 요청자의 범위 - 제1항

○ 제1항에서 말하는 ‘연관검색어’는 ‘관련검색어’라고도 하는데, 이용자들의 검색 패턴을 분석하여 특정한 검색키워드의 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현출되는 그 키워드와 연관한 키워드를 말한다. 연관검색어는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연이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자동 로직에 의해 추출하여 제공하는 이용자 편의 서비스의 하나이다. 연관검색어는 검색한 단어에 대해 관련 검색어를 제공하여 확장된 주제 혹은 상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자동완성 검색어’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할 때 키워드의 입력이 끝나기 전에 그 입력한 문자열을 포함한 검색어 리스트를 자동으로 제시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다. 이는 국내 주요 포털의 검색서비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용자의 검색패턴이 반영된 결과를 자동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 제1항에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자의 범위를 ① 후보자 ② 예비후보자 ③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④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⑤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와 함께

선거출마의사를 표방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자를 동일하게 간주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 여기에서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하고,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 제1항에서 선거 또는 정당 내 경선에 ‘출마의사를 표명한 자’까지 포함한 것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어서 후보자와 후보 예정자 간의 불평등한 검색어 삭제 정책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과정은 절차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의 실질적인 활동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

○ KISO는 2016년 1월 8일 결정한 2015심31 결정에서, ‘출마의사를 표명한 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외에,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출마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우를 포함하였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출마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경우 이는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 제1항의 적용기간 - 제2항

○ 제2항은 제1항의 적용기간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만일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적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의하면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설정하여 대통령 선거는 23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규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적용기간을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간을 확장하였다.

## □ 적용의 예외조항 - 제3항

○ 제3항은 후보자에 대해 공인의 차원에서 검색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과 관련한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검색어 제외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폭넓은 비판이 허용되고 상호교차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족됨은 물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제18조 게시물의 처리

### 제18조(게시물의 처리)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1.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 등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1 의의

○ 게시물의 처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제2장의 ‘게시물에 관한 정책’에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는 1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상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장자와 게시물 게시자,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매개하는 포털사업자 모두에게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관계로, 이 법이 남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이에 제18조에서는 제17조 제2항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거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일반 게시물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해서 선거과정에서 이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 2 요건

### □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지침 - 제1항

○ 제1항의 내용은 임시조치 요청 시 적용되고 있는 제5조 ‘처리의 제한’을 통한 기본적인 적용 이외에 선거관련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조치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5조에서 KISO는 임시조치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 요청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거나 처리 제외대상자를 설정하는 등의 정책결정을 담고 있는데, 이 외에도 선거관련 기간에 적용되는 게시물 처리 정책은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 등일 경우 회원사는 공식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선거관련 기간 중 정당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도록 했고,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핫라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 지침을 요청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 후보자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 제2항

○ 제2항은 후보자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에 나타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

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을 때에도 임시조치의 요청시와 마찬가지로 접수단계에서 해당 게시물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선거 관련 정보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처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 제19조 적용범위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의 정책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1절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제20조(목적)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각 회원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절은 회원사에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 1 연혁 및 제정 취지

- 인터넷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간으로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무엇보다 인터넷 공간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손쉽게 정보를 이용하고 게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오히려 다수의 특정 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 만연하고 이에 동조하는 게시물 등이 대다수일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는 심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보다는 위축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 인터넷 역기능의 한 단면으로서 이러한 다수에 의한 소수자의 위축 효과 생산은 이전부터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KISO는 2013년 4월 17일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정책규정 제13조 1항 제4호)을 발표하고, 2013년 8월 6일 ‘인터넷 공간의 집단 양극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 대책과 완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 본 절과 유사한 사항으로 2013년 정치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가 이루어졌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와 관련

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른바 혐오 표현(hate speech)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등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KISO 정책위원회에서는 지역 차별 등의 정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양극화, 사회갈등 등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 5월 이른바 ‘노알라’ 검색관련 심의부터 관련 정책을 논의해 왔다.
- 논의과정에서 매개하는 미디어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회집단 간의 극화(polarization)는 여론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회 갈등을 인위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위축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적 표현 또는 ‘차별적 낙인찍기’와 관련해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절을 규정하게 되었다.

## 2 규제에 대한 논의

### 1. 차별적 표현에 대한 제도적 규제

-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혐오표현(hate speech)’ 이란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내면적 혐오감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나 증오는 상대방에게 편견과 차별,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가. 국내외 제도적 논의

- 우리 헌법은 개인 또는 집단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헌법 제21조 제4항)함으로써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 제한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 등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다방면으로 규제조항이 만들어져 있다.
-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개인일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신분을 가진 경우 그 피해가 개인에게 특정화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법률적인 근거를 통한 제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그로 인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은 국가에 의한 제재의 형태로서 형벌적 규제가 쉽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해석하는 입장 역시 존재한다.

#### 1) 국내

- 국내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표현이 독립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집단이나 범주의 영역에 속한다면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 2) 해외

○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가 있는 경우가 있다.

### ① 영국

영국에서는 2010년 일반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국가/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1976)’, 2006년에는 ‘인종/종교혐오금지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이 제정되었다.

### ② 독일

독일에서는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한 대중증오선동죄(Volksverhetzung)로 처벌한다.

### ③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인권법(Human Right Act, 1993)을 통해 집단의 피부, 인종 등을 이유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

## 2. 차별적·혐오적 표현에 대한 자율규제

### 가. 의의

○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의 사회적 용인 정도’가 불명확한 점은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표현에 대해 행사적이고 행정적으로 직접규제를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이와 같은 시사점을 토대로 본 절은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온전한 의미의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절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성격이 존재함에도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삭제 가능한 측면에는 각 회원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을 근거로 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절의 내용은 회원사가 근거로 삼아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각 회원사가 자사의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본 규칙보다 더 강하게 차별적 표현 등에 대해 약관 등의 형태를 통해 제재하는 것은 본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나. 예외

○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의 경우 포털서비스 운

영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연관검색어 등의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정보 자체는 삭제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본 절의 내용은 특정한 일정부분의 이용자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 3 주요 내용

#### 1. 의의

○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비판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특정집단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경우에 게시물 등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목적에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 2. 삭제기준

##### 가. 구성요건

○ 구체적인 삭제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어야 한다. 다만 위에 제시된 집단 이외에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닌

선천적 혹은 사회적으로 취득된 집단에 대한 표현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즉 한 개인을 구분하는 인구사회학적 속성으로서 집단범주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해당 구성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침해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집단에 대한 편견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생태학적 오류’는 개인 간의 갈등을 집단 또는 사회 속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연결고리 기능을 하게 된다.

##### 나. 제한적 구성요건

○ 사회적 담론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단순한 차별적 게시물까지 모두 삭제할 경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에 KISO는 다음의 두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구성요건을 표시하였다.

- ①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②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여야 한다.

○ 모욕적이거나 혹은 혐오적인 표현은 게시물 등이 표현하는 차별적인 내용이 그 표현 자체나 제시한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저속하고 과도한 표현인지를 주로 판단한

다. 정책위원회 심의에서는 특정 집단에 지역 차별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욕설 등이 포함된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경우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단지 과거의 언론보도나 역사적인 자료를 발췌한 자료를 근거로 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극단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 다. 심의사례

-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특정 집단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위원회의 심의사례에서는 욕설 혹은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진 자료를 수집하여 ‘오로지’ 특정집단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된 글의 경우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불이익을 현저히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단서규정을 통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인의 공적업무에 관련된 게시물인 경우 적용 예외사유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인의 공적업무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실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게시물의 경우 정책규정 제2장 제1절(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 제2절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제22조(목적) 본 절은 생명존중의 인터넷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3조(게시물 등 제한) 회원사는 자살과 관련된 유해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한다.

제24조(커뮤니티 등 제한) 회원사는 카페 등 커뮤니티 명칭에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제25조(긴급한 게시물 특칙) 회원사는 신고 등을 통해 자살 시도의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제26조(검색 특칙) 회원사는 ‘자살’ 및 ‘동반자살’ 검색어의 검색 시 자살 예방 상담기관 등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 1 연혁 및 제정 취지

- 한국은 2003년 이후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2017)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3,09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5.6명으로 전년 대비 0.9명(-3.4%) 감소하였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 수치가 3.8명(17.5%) 증가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사망원인 순위 2위이다. 이를 OECD 국가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과 비교해 보면, 때 OECD 평균 12.0명에 비해, 한국은 24.6명(16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sup>4)</sup>.
- 특정한 개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개인적인 이유에서부터 사회구조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급격히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 정보화 과정을 겪으면서, 인터넷이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등 그 매개적인 역할을 일정부분 제공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자살 사이트’로 통칭되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자살정보들은 자살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자살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체 역

할을 한다.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反)자살’ 사이트들과 다르게 ‘친(親)자살’ 사이트들은 1) 죽음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극단화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2) 죽을 권리를 옹호하며 자살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데 일조한다.

-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습득된 자살관련 정보가 모방자살의 형태로 표출되거나 자살 행동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른바 자살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 커뮤니티, 그리고 검색어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졌다.
- KISO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자살을 간접적으로나마 예방하고 좀 더 생명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12년 6월 7일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결정을 통해 인터넷상의 자살 정보 차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 2 의의

- 본 절은 정책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이 국가가 이용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공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또한 그 의의는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고 커뮤니티의 명칭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제25조에서 회원사의 적극적인 신고조치를 규정함으

4) 출처 :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17. 9. 기준),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로써 자살이 우려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 자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언론계의 경우 (사)한국기자협회가 「자살 보도 윤리강령」을 마련해서 언론보도가 자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윤리강령에 따르면,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모두 7가지의 실천강령을 세웠다. 이와 함께 (사)한국기자협회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자살보도에 대한 실천요강을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 KISO의 자살예방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윤리강령」과 거시적인 의미에서 목적은 비슷하지만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천적인 사회적 책무활동이라 할 수 있다.
- 본 정책규정을 근거로 2015년 1월 1일 KISO-경찰청 간 자살 우려자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자살 우려자의 구호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주요 내용

#### 1. 삭제의무

##### 가. 제23조, 제24조

- 본 절의 제23조, 제24조는 자살 관련 게시물, 동반 자살 커뮤니티 등을 신고 형태 등으로 회원사가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살의 경우 동반 자살자를 회유 혹은 모집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게시물 및 커뮤니티가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삭제 또는 이용제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고 단순히 자살 관련 게시물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것은 어부지 등이 우려되어 우선적으로 커뮤니티의 이름을 변경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다만 자살을 방지 및 구호하거나 단념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나. 신고규정

###### 1) 제25조

- 제25조는 자살 시도가 예상되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으면 회원사들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신고는 자살예방을 위한 일종의 긴급구조조치로서 기관협력의 전형적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는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IP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부득이 제3자인 경찰 등에 자료를 제공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적 면책이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생명을 구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 제25조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법적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중요성이 법률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KISO의 입장이다.

○ 다만 사업자는 제25조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본 조항은 긴급한 우려가 있는 일부 게시물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예방정책

### 1) 제26조

○ 제26조는 자살 및 동반자살 관련 검색어를 검색할 경우 자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처음에 노출되게 하는 것으로, 회원사의 검색결과를 일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수정하게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모든 회원사는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자살 상담 전화 및 웹페이지 등을 노출하고 있다.

○ 이는 검색결과 노출 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의 배열 형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매우 적극적인 미디어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조항은 정보매개자로서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능동적인 조항이라 할 것이다.

## 4 참고 자료

### □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준칙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주변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2.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3.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3절 사자의 디지털유산 관련 정책규정

####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8조(계정)

- 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 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1 연혁 및 제정취지

### 1. 의의

- 인터넷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그만큼 다양한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죽은 자(死者, 이하 사자)의 권리물이 누적되는 가운데 그들의 디지털유산(遺産)에 대한 권리 분쟁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 사자의 디지털유산이라 함은 넓게는 인터넷이용자가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sup>5)</sup>(한국법제연구원, 2011)에서부터 좁게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 작성 또는 보관의 디지털 정보'<sup>6)</sup>(김기중, 2010)로 정의할 수 있다.
- 디지털유산 처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사례는 2004년 11월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엘스워스(J. M. Ellesworth) 병장의 부모가 야후(Yahoo)에 아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요청한 일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유족들이 사망한 자식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 사례를 통해 '디지털 유

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 신중히 논의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 2. 국내외적 제도화 논의

- 디지털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입법안이 나오는 등 제도화 논의가 이어졌다.

#### 가. 국내

국내에서는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나왔지만 디지털유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 사자의 디지털유산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늘어가면서 이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 나. 해외

미국에서 디지털 유산에 관하여는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에서 주 차원에서 입법추진이 있어왔고 지난 2014년 8월 12일 델라에워 주에서는 스콧(Scott) 상원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계정 및 유산의 관리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sup>7)</sup>이 시행된 바 있다.

5) 김현수 외, '디지털 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1.11.30., p. 20.

6) 김기중, '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0.10.13., p.23.

7) 'AN ACT TO AMEND TITLE 12 OF THE DELAWARE CODE RELATION TO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ND DIGITAL ACCOUNTS', 2014.5.15.

## 다.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KISO는 2010년 10월 13일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당시 상속인에게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규정, 같은 법 49조의 정보통신망 비밀 침해 금지 등에 위반하는 것인지 등이 폭넓게 검토되었다.
- 이뿐만 아니라 KISO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이전에 발표된 법률안을 검토하고 법률개정 방향성을 제시하였다<sup>8)</sup>. 이 보고서에서 KISO는 사자의 디지털유산과 관련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세부 처리 절차,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즉, 법률안과 자율규제 권고안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KISO는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유산(사망한 회원의 계정과 관련 콘텐츠) 처리 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위 규정에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아 내지는 못했지만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이상 사업자들의 자율 규약에 모든 내용을 담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8)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1),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보고서, 방송통신정책연구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 국내에서 사자의 디지털유산 처리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자율규약으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정책결정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그 이전이라도 우선 필요한 절차와 제공 가능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설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 주요 내용

### 가. 디지털정보의 상속성

- 이 규정은 디지털정보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행법상 상속은 구체적 재산의 형태를 묻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속해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 역시 특별법에 의하여 그 승계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상속제도에 의하여 일반적·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이 규정은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특별법이 없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상속이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상속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 나. 온라인 계정 접속권

- KISO는 ‘디지털 정보’에 재산권적 성격이 있고 일정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정보’인 ‘디지털 유산’도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그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KISO는 제28조에서 회원사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계정 접속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온라인 계정은 이용자의 아이디(ID), 비밀번호, 개인신원정보, 이용정보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개인이 맺은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일종의 채권적 권리를 포함한다. 채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이 인정되지만, 하나의 온라인 계정으로 복합적인 서비스 기능이 구현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 계정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만이 아니라 비재산적 가치 또는 인격적 가치가 병존해 있다.
- KISO가 온라인 계정 접속권을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한 민법 제1005조 단서규정을 의식한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며, 사망자 개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개인정보이기도 하므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상속인의 개인식별정보나 계정을 이용하는 중에 기록된 각종 활동, SNS상의 관계망 정보 등은 인격의 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KISO는 계정을 인격권 보호 관점에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온라인 계정의 상속을 허용하면 계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 다. 디지털정보

KISO 정책규정 제28조 2항에는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는 온라인서비스 내의 화폐, 사이버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

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함)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는 제외된다(법제연구원, 2011).

## 2) 경제적 가치가 불분명한 디지털 정보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경제적 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그 경제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피상속인이 맺은 약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이 경제적 화폐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적립되는 등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라. 계정 폐쇄 절차

○ 사망자의 계정이 존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어려움 및 이를 통한 사망자의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의 계정이 존속되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 및 관리상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상속인들이 사업자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 계정폐쇄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절차를 제기하고 있다.

○ 상속인은 △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같은 소명 내용은 해외 사업자인 구글, 페이스북 등과 유사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다.

## 마. 백업 서비스

○ 상속인은 사업자에게 디지털유산을 백업해주는 편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상속인이 인터넷서비스 공간에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자산을 모으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계정 없이 접근이 어려운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피상속인의 디지털계정을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를 대신해 정보에 접근하여 제공하는 창구가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인 유산상속행위가 가능해진다.

○ 이러한 디지털유산 백업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개별 사업자의 재량권으로 간주했다.

## 제4절 청소년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

### 제30조(목적)

본 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1조(청소년 보호 조치)

회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검색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2. 해당 검색어의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 제32조(청소년 유해 검색어 관련 세부 기준)

청소년 유해 검색어 관련 세부 기준은 KISO 내의 특별 위원회인 온라인 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가 마련할 수 있다.

검토, 세부 기준 정립 등을 완성하여 DB 구축 및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KISO의 회원사에 DB를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 등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DB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유해매체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 또한 기술적 필터링을 적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자들에게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 등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DB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후 청소년 보호 및 성인의 알 권리에 대한 균형 잡힌 보장을 위해 ‘청소년 유해 검색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17년 3월 24일 개최된 제119차 정책위원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을 마련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회원사의 청소년 유해 검색어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검색어를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안을 마련하였다.

## 1 연혁 및 제정취지

### 가. 의의

- KISO는 2013년 8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청소년 보호 DB 구축 관련 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2013년 9월부터 작업을 통해 2014년 9월 기술

## 제5절

###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 제33조 (목적)

본 절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기사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4조(게시물 제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나 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사의 명이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의 경우
2.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연혁 및 제정취지

### 가. 의의

- ‘페이크 뉴스’ 혹은 ‘가짜 뉴스’는 2016년 미 대선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가짜뉴스가 일정부분 폐해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는 진실을 표현할 자유뿐만 아니라 허위를 표현할 자유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 다양한 의견은 이른바 공론장에서 논의를 통해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언론의 기사를 가장하여 작성된 게시물의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게시물이 사실이라고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 공론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획득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KISO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을 규제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해당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2 요건

### 가. 언론사의 명이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 작성된 기사형태를 갖춘 게시물일 것

- 언론사의 명이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언론사의 명의를 사칭한다는 의미는 실제하지 않는 신문인 '경기 연합뉴스' '대한신문' 과 같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언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사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는 기성 언론사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직책 역시 '기자' '부장' '논설위원' '수석기자' 등 언론사의 직책을 도용한 것을 의미한다.
- 명이나 직책을 모두 사칭 또는 도용할 필요는 없고 명의 혹은 직책 하나만 활용한 것으로 족하다.
-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은, 형태나 방식이 언론사의 방식과 유사하게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 나.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것

- 어떠한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공식적으로 제공된 자료, 언론 등이 보도한 자료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 다. 풍자 또는 패러디 등이 아닐 것

- 허위임이 명백하나 단순히 어떠한 사항을 풍자 또는 패러디함이 명백한 경우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 이에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작성된 뉴스 형태의 게시물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와 같이 해당사안이 기존 언론의 패러디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 대한 명백한 풍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삭제가 제한된다.

## 라.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 선거기간 게시물이 아닐 것

-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따른 정책규정 제2장이, 선거기간에는 특별규정인 정책규정 제4장이 각각 적용된다.

Memo

Memo

Memo